

의안번호	제594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4년 5월 31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칩

#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94
----------	-----

제출연월일 : 2024년 5월 31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도의회 신청사, 후생복지관 건립 등에 따라 청내 주차난 심화, 도청 방문 민원인 및 각종 행사 내방객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 인근 주차장과의 요금 격차를 줄여 공무 목적 외 차량 출입을 최소화하여, 직원 등 주차 분산을 유도하여 도민 불편 해소하고
- 다자녀 가정, 환경친화적 전기자동차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한 주차요금 조정(안 제4조)
- 다자녀 가정, 친환경 전기자동차 감면 규정 정비(안 제5조)
  - 다자녀 가정 기준 변경(3자녀→2자녀)
  - 친환경 전기자동차 감면(1시간→2시간) 등

## 3. 의안전문 : 붙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5. 관계법령 발체 : 붙임

##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30분(1구획당)까지 : 기본요금 500원, 30분”을 “1시간(1구획당)까지 : 무료, 1시간”으로 한다.

제4조제2호는 삭제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60분까지만 면제하며 60분”을 “(2시간까지만 면제하며 2시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수여자”를 “수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나목 중 “등록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지닌 사람”을 “등록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단서 중 “1시간”을 “2시간”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이 소유한 차량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주차장 이용안내판(제10조 관련)

**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운영 및 요금 적용시간

운영시간 : 평일 및 휴일 24시간 ※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요금적용 : 평일 08:00~20:00

2. 주차요금

주차요금은 입차 후부터 1시간까지 무료이며 매 10분 마다 200원씩 추가 징수합니다.  
관계법규에 의한 감면은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조례에 따릅니다.

3. 주차요금 면제차량

방문부서 확인을 받은 2시간 이내의 민원인 차량(해당부서 확인)  
관용차량, 도의원·출입기자 차량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각종 행사 등에 참석된 차량

4.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합니다.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하여야 합니다.  
차량 내에 귀중품의 보관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관리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손해배상 책임

주차장에서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자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6. 장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장기 방치되는 차량은 견인차량보관소로 이동 보관되며 주차료, 견인료, 보관료는 차량소유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충 청 북 도 지 사**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주차요금 징수)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자동차(이하 “차량” 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한다.</p> <p>1.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온 때부터 최초 <u>30분(1구획당)까지</u> : <u>기본요금 500원, 30분 초과 시 매 10분 마다 200원씩 추가 징수(10분 미만일 때에는 이를 10분으로 한다.)</u></p> <p>2. 1일 주차요금 : 8,000원(1일 이상 주차는 허용하지 않는다.)</p> <p>3. (생략)</p> <p>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p> <p>1.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방문 확인증을 지닌 사람의 차량(<u>60분까지만 면제하며 60분을 초과할 경우 매 10분마다 200원씩 징수한다</u>)</p> <p>2. ~ 8. (생략)</p>	<p>제4조(주차요금 징수) ----- ----- ----- ----- -----</p> <p>1. ----- ----- <u>1시간(1구획당)까지</u> : <u>무료, 1시간</u> ----- ----- -----</p> <p style="text-align: center;"><u>&lt;삭 제&gt;</u></p> <p>3. (현행과 같음)</p> <p>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 ----- ----- -----</p> <p>1. ----- -----<u>(2시간까지만 면제하며 2시간</u>----- ----- -----</p> <p>2. ~ 8. (현행과 같음)</p>

9. 충청북도 도민대상 수상자  
또는 충청북도 명예도민 수여  
자의 차량

10. · 11. (생략)

② (생략)

③ 주차요금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주차요금  
감면사유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80퍼센트 감면  
가. (생략)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등록증을 지닌 사람

다. · 라.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  
가. (생략)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는 충전목적으  
로 충전시설에 주차하는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요금

9. -----  
----- 수상  
자-----

10. · 11.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1. -----  
-----  
가. (현행과 같음)

나. -----  
등록장애인

다. · 라. (현행과 같음)

2.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  
-----  
-----  
-----  
----- 2시간 -----

면제

다. (생략)

라. “아이사랑보너스카드” 소지자 또는 충청북도에 주소지를 둔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소유한 차량으로서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를 제시하는 경우

④ (생략)

---

다. (현행과 같음)

라.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이 소유한 차량

④ (현행과 같음)

## 관련법령 발췌

###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 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2018. 12. 31., 2019. 4. 2., 2021. 7. 27.>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7. 삭제 <2016. 12. 2.>
8. 삭제 <2016. 12. 2.>
9.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기 위하여 수소를 생산·저장·운송·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을 제작·조립하는 기업
  -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생산하거나 설치·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업

#### □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자녀가정”이란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제1호

### ○ 사 유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 운영 및 시행에 필요한 조문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서, 별도의 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사유에 해당함.

### ○ 작성자

행정국 행정운영과장 김은영